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
지도·감독 및 결과 공개 규정 신설 등〉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

이에,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제3항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u>④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에 대

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관장하도록 하여 기관 내 인사 운영·관리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¹⁾

그런데,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다수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같은 해 6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채용·조직·복무 분야에서 총 37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이중 9건(17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2025년 2월 공개하였음.²⁾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을 징계처분하였다고 밝혔음.³⁾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2025.2.27.

조선일보, ”“우린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 구제불능 선관위“, 2025.2.2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8명 임용취소 결정“, 2025.4.30.

《 직무감찰 지적사항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단위: 건, 명)

지적사항 현황					
구분	징계(인원수)	주의(인원수)	통보		
			일반	인사자료(인원수) ⁴⁾	시정완료
채용분야	7(14)	8(10)	3	4(8)	-
조직분야	-	1	1	-	-
복무분야	2(3)	5	4	1(2)	1 ⁵⁾
합계	9(17)	14(10)	8	5(8)⁶⁾	1
분야별 주요 문제점					
구분	문제내용				
채용분야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조직적 특혜 제공(채용, 전보, 관사제공 등)				
	면접 점수 임의 작성 및 변경, 관련 증거 조작 및 인멸				
	특정인 채용 청탁 및 비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 부당 실시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는 특정인 임의 채용				
	시·도선관위의 친인척 특혜 정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소홀				
	응시요건 미충족자 채용 등 경력경쟁채용 업무 부적정				
조직분야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1급 직위 신설 및 법정 임기를 무시한 자리 나눠먹기식 운영				
	복수직급 및 별도정원 과다 운용, 선관위법 위반 보직 부여				
복무분야	장기간·반복적 무단결근, 허위 병가 사용 등 복무 태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목적 연수휴직 부당 승인, 범죄사건 온정적 처리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소홀				
	교육실적 미달 직원 승진 임용 및 관련 사실 은폐				

*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25.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4) 통보 유형 중 ‘인사자료’는 해당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5) 무단결근·지각·조퇴로 과다 지급받은 봉급 등 금액 15,244,220원을 환수한 사실을 통보한 사례임.

6) 채용 및 복무분야에서 2명 중복됨.

이와 같은 채용 비리 현황과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금지 및 신고 사항 공개 규정을 들 수 있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舊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이 될 수 없고, 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친족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이 가능함.⁸⁾

7) 뉴스1, “씩어 굶은 ‘가족회사’ 선관위…”투명성 제고” 믿을 방법 없다”, 2025.2.28.

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보좌할 4촌 이내의 친족이나 5~8촌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신고사항을 국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⁹⁾

《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 공개 》

| 친인척보좌직원 현황

전체 95 건 (1/10 페이지)

10

적용

전체기간

전체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목록다운로드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95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5. 3.)	2025-04-03			457
94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5. 2.)	2025-03-04			663
93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5. 1.)	2025-02-12			559
92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12.)	2025-01-06			967
91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11.)	2024-12-02			1664
90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10.)	2024-11-01			2227
89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 9.)	2024-10-02			14460
88	해당자 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 8.)	2024-09-02			28809
87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 7.)	2024-08-02			36075
86	해당자 미존재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2024. 6.)	2024-07-02			45730

<<

<

1

2

3

4

5

6

7

8

9

10

>

>>

- 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와 같은 규정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국회 내·외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임.¹⁰⁾

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친인척 채용현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혜채용 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고, 채용업무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채용 시 신고 및 공개의무의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10)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국회 내·외부에서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舊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개된 채용 분야의 주요 문제 사례는 대부분 사무총장·사무차장·과장 등 고위직의 자녀 등에 대한 특혜가 문제된 사건이었음.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보고서 채용분야 주요 문제 사례 》

소관기관	문제된 직위 ¹¹⁾	주요 내용
인천선관위	前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상급선관위 전보, 관사제공 등 자녀에 대한 특혜 제공 지시 등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과장 등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녀가 응시한 경력채용 시 면접 점수 임의 작성 및 변경 등
충북선관위	前중앙선관위 사무차장 ¹²⁾ 등	특정인 채용 청탁 및 비다수인 대상 경력경쟁 채용 부당 실시
서울선관위	서울선관위 과장 등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응시한 경력채용 시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는 임용 등
경기선관위	경기선관위 과장 등	과천시선관위 전 사무과장의 예비사위, 경기선관위 전 사무처장의 자녀 등이 응시한 경력채용 시 전출동의 없이 임의 채용 등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계장 등	전출동의 없는 특정인 임의 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
경남선관위	경남선관위 과장 등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
충북선관위	前청주시상당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경북선관위	경북선관위 계장	사실과 다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 ¹³⁾ 의 합격을 유도

* 감사원, 앞의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은 친인척 채용 시 신고

11) 징계 등을 받은 직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2) 이 건 경제 당시에는 2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13) 경북선관위에서 4급으로 정년퇴직한 자의 자녀

14) 의안번호 제2209038호

및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대상 및 그 범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직급의 고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전부에 대해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친족이 아닌 일반 채용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격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